

의안번호	제2809호
의결 연월일	2024. 7. 25. (제295회)

의결 사항	
----------	--

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목 록	
건 명	부 서
1.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	인구청년추진단
2.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[변경]	보 건 소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7. 1.

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제280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1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제안사유

“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외 1건”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(심사 의결)하고자 합니다.

2. 재산현황 총괄

구분		수량	면적(m ²)	기준가격(천원)	비고
취득	공작물	1	-	1,400,000	W12.096m × H6.528m

3. 사업별 재산내역

사업명	재산구분	재산유형	재산의 표시			담당부서
			수량	면적(m ²)	기준가격(천원)	
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	취득	공작물	1	-	1,400,000	인구청년 추진단
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[변경]	-	-	-	-	-	보건소

4. 사업별 개요

①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

가. 사업목적 및 용도

- (목적)
 - 재난·재해·기상 및 각종 행정정보의 효과적인 안내·홍보
- (용도) 군정홍보용 LED 옥외전광판 설치

나. 취득 개요

- 대상 재산현황(행정재산, 재산관리관: 인구청년추진단)

구분	소재지	사업기간	재원조달	기준가격(천원)	설치장소(규격)	비고
계(2개소)				1,155,000		
공작물	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	2024. 7.~11.	군비	800,000	임차건물 옥상 (W12.096m×H6.528m, 단면)	
				35,000 (임차비)	연 3,500천원×10년	향후 인상없음
	고성읍 중앙로 48	2023. 1.~5.	군비	270,000	임차건물 옥상 (W6.72m×H3.84m)	
				50,000 (임차비)	연 5,000천원×10년	향후 인상없음

- 공유재산 심의안 의결일: 2024. 4. 24.(2024년도 제2회)

다. 변경사항 내역

- 공작물 2건 중 1건 사업비(금액), 규격 변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소재지	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	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
기준가격	800,000천원(군비 100%) ※ 민간건물 임차비 35,000천원(10년)	1,400,000천원(군비 100%) ※ 민간건물 임차비 35,000천원(10년)
설치장소(규격)	임차건물 옥상 (W12.096m*H6.528m, 단면)	임차건물 옥상 (W12.096m*H6.528m, 양면)

- 변경사유: 국도변에 설치 시 양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

라. 추진경위

- 2022. 7.: 기본계획 수립
- 2022. 8.: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(2022년 제4회)
 - 고성읍사무소 외벽 1, 임차건물 옥상 1(고성읍 중앙로 48)
- 2023. 4.: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
- 2023. 6.: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(2023년 제5회)
 - 고성읍사무소 외벽 1→임차건물 옥상 1(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)
- 2024. 4.: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(2024년 제2회)
 - 임차건물 옥상(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) 사업비, 사업기간, 규격 변경

마. 향후계획

- 2024. 7.: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심의(제295회)
 - 임차건물 옥상(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) 사업비 10억 원 이상
- 2024. 7.: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
- 2024. 7. ~ 11.: 중앙조달계약, 옥외광고심의, 착공, 준공

바. 기대효과

-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 LED 옥외전광판 설치로 홍보 효과성 제고
- 전 국민 대상으로 관광상품 홍보(9미9경, 공룡엑스포 등)로 생활인구 증가에 기여

■ 추진부서: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소통홍보담당 정종욱 담당자 박연정 (82643)

□ 위치도



□ 전경사진



㉔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[변경]

가. 사업목적 및 용도

- (당초 목적) 보건복지타운 내 보건소 및 노인복지회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조성
- (용도)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

나. 사업 개요

- 기승인 재산현황(행정재산, 재산관리관: 보건소)

구분	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기준가격(천원)	비고
토지	고성읍 대독리 5-16	전	1,983	40,850	

- 사업기간: 2022. 10. ~ 2024. 4.
- 총사업비: 2,175,000천 원(군비 100%) / 일반회계
- 사업규모: 주차면 수 132면(면적 5,040m²)
-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일: 2022. 12. 9.(제279회 임시회)

다. 변경사항 내역

-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취소
→ 변경사유: 사유지 매입 불가로 인한 사업 취소

라.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2. 8.: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방침
- 2022. 11.: 지방재정 투자심사(자체, 적정)
- 2022. 12.: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(제279회, 제2549호)
- 2022. 12.: 타당성 조사 완료
- 2023. 12.: 2023년도 예산 반납
- 2024. 7.: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심의(제295회)

■ 추진부서: 보건행정과장 이윤희 보건행정담당 홍경희 담당자 정연옥 (☎4003)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



5. 재산구분별 취득 목록

① 공작물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기준가격(천원)	취득 시기	취득(매입)사유	비고
	유형	소 재 지	재산명				
합 계		1개소		1,400,000			
1	전광판	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	옥외전광판	1,400,000	2024	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	

《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》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
《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》
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